



## 자 기 소 개 서

※ 글자 크기 및 분량 : A4용지 1매 이내, 글자크기 11 Point로 작성

자기소개서 형식 : 자유서술

(단, 아래 선취업·후진학 학생은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)

### 1. 학교활동

☞ 현재 전공 과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

☞ 학교생활 (동아리, 인턴 활동 등)

※ 선취업·후진학 학생의 경우 (재직자, 휴직자 모두 기재)

- 부서 / 직무 등 경력내용 상세히 기재
- 선취업·후진학을 하게 된 계기

### 2. 앞으로의 진로계획





<서식 V>

# 신청인 서약서

본인은 산학협동재단의 장학금지원 신청인으로서, 산학협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지원을 받는 동안 **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.** 또한 본인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 지원금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※ <이중지원의 범위>

구 분	종 류						
중복지원해당 학자금 지원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가, 관계행정기관(행정안전부, 국방부, 보건복지부, 기획재정부, 법무부, 외교통상부, 국토해양부,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)</li> <li>■ 법원행정처</li> <li>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</li> <li>■ 한국장학재단,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</li> <li>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(상사법인, 민사법인,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)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</li> <li>■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 공기업</li> <li>■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</li> <li>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 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</li> <li>■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</li> <li>■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</li> <li>■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</li> </ul>						
학 자 금 중 요 종 류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출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- 든든학자금(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), 일반상환학자금(WEST 포함),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</li> <li>■ 타기관 학자금 - 공무원학자금 대출(공무원연금공단),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(국방부),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(국가보훈처),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, 근로자학자금 대부(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) 등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장학금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-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·II 유형, 대통령과학장학금, 대통령드림장학금,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국가연구장학금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,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</li> <li>■ 정부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지자체, 민간장학재단, 기업,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- 군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하이서울장학금,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타 학비 지원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-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'학비 지원제도'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</li> </ul> </td> </tr> </table>	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- 든든학자금(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), 일반상환학자금(WEST 포함),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</li> <li>■ 타기관 학자금 - 공무원학자금 대출(공무원연금공단),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(국방부),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(국가보훈처),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, 근로자학자금 대부(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) 등</li> </ul>	장학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-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·II 유형, 대통령과학장학금, 대통령드림장학금,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국가연구장학금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,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</li> <li>■ 정부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지자체, 민간장학재단, 기업,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- 군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하이서울장학금,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</li> </ul>	기타 학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-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'학비 지원제도'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</li> </ul>
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- 든든학자금(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), 일반상환학자금(WEST 포함),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</li> <li>■ 타기관 학자금 - 공무원학자금 대출(공무원연금공단),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(국방부),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(국가보훈처),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, 근로자학자금 대부(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) 등</li> </ul>						
장학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-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·II 유형, 대통령과학장학금, 대통령드림장학금,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국가연구장학금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,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</li> <li>■ 정부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지자체, 민간장학재단, 기업,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- 군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하이서울장학금,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</li> </ul>						
기타 학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-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'학비 지원제도'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</li> </ul>						
중복지원 예외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근로장학금, 멘토링장학금, 연구(보조)원 수당, 식비,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※ 단,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는 불인정</li> <li>■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</li> </ul>						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성명: \_\_\_\_\_ 서명 또는 (인)

<서식Ⅵ>

## 결격사유 확인서

2016학년도 귀 재단 장학생 중 결격사유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학 과	학 년	성 명	결 격 사 유	비 고
				* 결격 사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하실 것

(주) 결격사유 내용

- (1) 장학생이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경우
- (2) 졸업, 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
- (3) 2016학년도 1학기 성적이 B<sup>0</sup> 이상 유지되지 않은 경우
- (4) 한국장학재단의 이중방지 지원시스템 심사결과, 이중지원 해당자인 경우
- (5) 기타 본 재단 조치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등

※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본서식에 ‘결격사유 없음’ 을 표기하여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대학교 총 장 (직인)

\_\_\_\_\_

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귀하

<서식Ⅶ>

## 장학금 수령을 위한 은행계좌 확인서

구 분	내 용
1. 대학명	
2. 은행명 및 계좌번호 (※ 반드시 해당 학교 통장 계좌를 기재)	
3. 예금주명	
4. 장학담당 부서명 전화번호	
5. 장학담당자 성명	

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.

년    월    일

\_\_\_\_\_ 대학교 총 장 (직인)

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귀하